

### ●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-70호

「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9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「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운반물 분류기준 등 국제 방사성물질 운반기준의 갱신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, 그동안의 규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 변경(제5조제1항제3호나목)
- 나. 운반지수 산출방법 보완(제10조제1호)
- 다. 핵임계안전지수 산출방법 변경(제11조제1호)
- 라. L형 운반물 운반서류 작성방법 개선(제12조제2항)
- 마.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개선(제35조)
- 바. 방사성핵종별 A값 보완(별표1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1) 일반우편 : (03154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,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

2) 전자우편 : gokbm99@korea.kr

3) 팩스 : 02-397-7341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(전화 02-397-7337, 팩스 02-397-73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-71호

「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「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